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행위 조사 근거 신설 등〉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61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행위 조사 근거 신설	2
2.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	7
3. 위반행위 조사 및 신고포상금 지급 권한의 위탁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6.
3. 회부연월일 : 2025. 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시행세칙」은 위탁근거 없이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제도와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반행위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의 위탁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제도 운영을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9 신설, 제71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행위 조사 근거 신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행위 조사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맹점 등에게 업무보고, 자료 제출 등을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6조의9 신설).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업무를 위탁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동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26조의9(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거나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u>바에 따라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맹점, 관계 법인·단체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u>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26조 의2, 제26조의9, 제27조부터 제29조 까지 및 제70조의2----- ----- ----- -----.
--	---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준수사항¹⁾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³⁾

이와 관련하여,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관련 고시⁴⁾ 및 내부 규정⁵⁾에 근거하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이하 생략)
-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70조의2(포상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6조의5를 위반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3) 다만, 이 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4)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제10조(기타사항) ① 발행자는 상품권의 발행번호·제작·교부, 환전, 판매촉진·회수대행지원금, 상품권의 수거, 사고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발행자는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기준 및 지급제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온누리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시행세칙에 규정해야 한다.
- 5)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시행세칙」(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규정)
- 제2조(신고포상제도) ① 공단은 운영요령 제10조제2항에 의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신고내용(증거자료 등)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하거나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4.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에서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
 5.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대행가맹점이 그 환전을 대행하

가맹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 점검 등 위반행위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동 조사는 ‘행정조사’에 해당하는바, 이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의미함.⁶⁾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에게 수인의무가 부과되고 조사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관련하여,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은 법령 등(법령 및 조례·규칙)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⁷⁾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는 경우

6.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7.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9조의16에 따른 환급금액 비율 이상을 사용한 사용자의 잔액 환급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제3자를 동원하여 상품권을 매집하는 경우
9. 개별가맹점이 가맹점이 아닌 곳에 물품대금 등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③ ~ ⑦ (생략)

제5조(위반행위 조사 등) ① 공단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가맹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통시장법 제26조의5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의심될 경우
2. 보칙 제2조에 따라 부정유통 신고가 접수될 경우
3. 이외 전통시장법 및 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될 경우

② 공단은 상품권 유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특별점검이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 카드사, 운영기관, 상인연합회 및 지회 등에 위반행위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그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⁸⁾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이며, 안 제26조의9제2항의 내용은 현장조사에 관한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⁹⁾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71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행위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사 입법례¹⁰⁾를 참고하여 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장

7)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5., p.702

9)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0) <참고 입법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조사·보고 등) ②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보고와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가격 안정, 안전 관리 및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61조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장·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판매시설·영업소시설·위탁운송시설·저장시설, 가스용품 제조시설, 용기, 가스용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행위 조사에 따른 조사 대상자의 권리 제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수탁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반행위 조사 및 포상금 지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2.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7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 <u><신설></u>	제7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26조의9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2.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	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현행과 같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행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동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한 제재 수단들을 필요성이 있어 보임.

다만, 입법례를 참고하여 안 제26조의9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하여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 등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¹¹⁾

11) <참고 입법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 1의3. 제19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3. 위반행위 조사 및 신고포상금 지급 권한의 위탁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안 제26조의9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행위 조사 및 현행법 제70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7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u>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u> 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 -----제26조의2, 제26조의9,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70조의2----- ----- ----- -----.

안 제26조의9가 신설되는 경우 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구매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4.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수사항 위반행위 조사 권한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해 보임.

다만, 이 법 제70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권한의 위탁 근거는 이미 반영되어 시행될 예정임.¹²⁾

문 의 처
02)6788-5465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986호, 2025.5.27. 일부개정)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70조의2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